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주택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○○○ (국토교통부장관)
제출연월일	20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「주택 신속공급 방안」(8.13)에 따라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에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로 건축할 수 있는 주상복합 건축물의 세대수 기준을 300세대 미만에서 500세대 미만으로 203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하고, 연면적 비율 기준도 90% 미만에서 100% 미만으로 완화하려는 것임.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대통령령 제 호

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7조제4항제1호가목 중 “300세대”를 “500세대”로 하고, 같은 호 나목 중 “90퍼센트”를 “100퍼센트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유효기간) 제27조제4항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은 203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.

제3조(세대수 및 건축물 연면적 비율 기준에 관한 적용례) 제27조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「건축법」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27조(사업계획의 승인) ① ~ ③ (생략)	제27조(사업계획의 승인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④ 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“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	④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의 경우	1. ----- -----
가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0조제1호다목에 따른 준주거지역 또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상업지역(유통상업지역은 제외한다)에서 <u>300세대</u> 미만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일 것	가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500세대</u> ----- ----- -----
나.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에서 주택의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 <u>90퍼센트</u> 미만일 것	나. ----- ----- ----- <u>100퍼센트</u> ----- -----

2. (생략)	2. (현행과 같음)
⑤·⑥ (생략)	⑤·⑥ (현행과 같음)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국토교통부 주택건설운영과	
연 락 처	(044) 201 - 3369